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26년 (※ 2년차 사업인 경우 '27년까지 구분하여 작성)			
		용자	이차보전	자부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방역시설					
	소계				
	소계				
<b>합 계</b>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규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 허가(등록)면적, 사육두수)		공사계획면적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m <sup>2</sup> (        마리)		m <sup>2</sup> (        마리)	m <sup>2</sup> (        마리)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용자)	천원
정부지원 신청액(이차보전)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m <sup>2</sup> )	천원/m <sup>2</sup>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m<sup>2</sup>)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서식 1-2>

## 종축장(종돈, 종계, 종오리장) 전문화 사업계획서

### 1. 사업대상자 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사업자 번호		
	축산업허가번호		
소재지	(주사업장)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팩스)

### 2. 일반현황

○ 사업주체 사육현황

소재지	종 축(GP)			원종축(♀) (GGP, GPS)	기타	시 설	
	성축	육성축	자축			설치년도	축사형태

\* 사육현황은 최근 기준으로 작성

○ 참여(계열, 계약, 위탁 등)농가 사육현황

경영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육규모		참여형태	전문인력	축산업허가번호
			종축	기타			

\* 사육현황은 최근 기준으로 작성

○ (종돈장의 경우) AI센터 활용(자체운영 포함)

센터명	소재지	용돈규모	공급량	비고

○ 주체 및 참여농가(GP, PS) 사업현황

경영체명	검정실적			분양실적(종축)			분양실적(모돈/실용축)		
	'23	'24	'25	'23	'24	'25	'23	'24	'25

- \* 분양실적(종축)은 경영주체가 GP 및 PS를 분양한 실적
- \* 분양실적(모돈/실용축)은 참여농가가 모돈 및 실용축을 분양한 실적

○ (종돈장의 경우) 주체 및 참여농가 질병관리 등

경영체명	네트워크참여	우수종돈장 선정 년도	방역 위생수준	친환경농장 지정

### 3. 사업계획

#### 가. 사업목표

- 종돈(종계, 종오리 등) 개량 방향, 질병 청정화 계획, 종돈공급 등

#### 나. 사업체계도

- (종돈장의 경우) GGP, GP(참여농가), AI 간의 모식도 등
- (종계장, 종오리장의 경우) GPS, PS(참여농가) 간의 모식도 등

#### 다. 사업추진계획

##### ① 전문종축장 운영방법 등

- 참여종축장 지분참여 및 역할분담 내용
  - \* 참여종축장과의 계약관계 유지 방법 또는 페널티 등 포함

- GGP(GPS)와 GP(PS)간 운영, 공급 계획
- 전문인력 보유 및 확보계획(GGP, GPS)
- (중돈장의 경우) 능력검정 및 중돈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계획

② 시설투자계획

- 대상자별 시설개선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시설				
		용자	이차보전	자담	계
축사					
내부시설					
계					

\* 년차별로 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표시

③ 운영자금 활용계획

④ 담보제공

⑤ 종축 개량 및 청정화 계획

\* 개량의 방법(선발, 검정, 기타형질 개량, 국내외 개량컨설팅, 등 구체화)

⑥ 시설개선후 운영계획

⑦ 사업손익전망

⑧ 자금상환계획

<별첨>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및 제 22 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 · 농장명 · 연락처(주택, 휴대전화) · 주소 (집주소, 농장주소) ·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 2. 수집 및 이용 목적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 3. 보유 및 이용기간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용자 전액 상환 시(15년)까지 보유 · 활용

## 4. 제공 받는자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사료자재부)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사업장 명칭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을 설치한다.
2.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농장 정문 입구)를 설치한다.
3. 휴대용 방역기를 구비한다.
4.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
7. 당해연도 예산 부족 시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받는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

## 자조금 납입확인서(예시)

- ①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서식으로 대체
- ② 시·도(시·군·구)는 도축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납입율 등 확인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 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단위 : 원)

기 간	도축마리수		
		납부할 금액(A)	실제 납부한 금액(B)
'25.1~12월 (닭·계란은 '23~'25년)			

5. 납입율(B/A) :                    %

### 6. 확인자

확인주체	확인사항	직함	성명	서명 또는 인
자조금 관리위원회	'25년(닭·계란은 '23~'25년) 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시·도 (시·군·구)	'25년(닭·계란은 '23~'25년) 동안 도축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납입율 등 확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 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첨부 서류>

1. 축산업 허가(등록)증
2.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4. 신용조사서
  - 총 사업비 중 융자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출가능금액에 명시되어야 함.
  - 대출가능 금액 0원으로 제출 시 대상자 선정 제외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6. 견적서

<추가 제출 증빙 자료(해당 시)>

1. 방목생태 축산농장(농림축산식품부)
2. 친환경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농산물품질관리원)
3. 저탄소 축산물(축산물품질평가원)
4.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축산환경관리원)
5. 안전관리인증(HACCP)(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